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2. 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월 17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7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18년 2월 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유상한

가. 제안이유

연내 개관예정인 아현건강증진센터(보건지소)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아현건강증진센터(보건지소) 설치 근거 마련(안 제9조)
- 한시기구(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)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관련 조항 삭제(안 제3조의2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이 만료('17.12.31.)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하고, 아현건강증진센터(보건지소) 설치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아현건강증진센터는 아현 주민복합시설 2층에 854㎡의 규모로 2018년 7월경에 개소 예정이며,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역적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, 지리적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만성질환 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○ 동 조례안은 2018.1.4. ~ 1.10.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